

대전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100208 판결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주식회사 G

7. H

변론 종결 2015. 5. 13.(피고 1 내지 6에 대하여) 2015. 10. 16.(피고 7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 주식회사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815,284원 및그 중 351,597,227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12%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와 피고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7. 체결한 증여계약은 172,990,6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원고에게 172,990,6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각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제1신용보증약정	2001. 11. 14.	2002. 11. 13.	127,500,000	150,000,000
제2신용보증약정	2002. 4. 17.	2003. 4. 16.	255,000,000 (거래한도 : 400,000,000원)	300,000,000

2) 피고 C, D, E, F, 주식회사 G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A은,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행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4) 그 후 제1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는 보증원금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4.11. 7.로, 제2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는 보증원금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10.로 각 최종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그 이행

1) 제1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및 제2신용보증약정서 제7조의 각 제1항 제5호는 신용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관련인정보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신용보증의뢰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4. 2.경부터 대출이자 및 다수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서에 등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4. 6.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352,868,1875원(= 제1신용보증약정 109,614,969원 + 제2신용보증약정 243,253,2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원고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위109,614,969원 중 1,270,958원을 상환받아,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은 108,344,011원(= 109,614,969원 - 1,270,958원)이 남게 되었고, 위 1,270,958원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부터 피고 A의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은 417원이다.

4)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4. 3. 1,272,060원, 2014. 5. 26. 437,142원, 2014. 9. 5. 260,050원 합계 1,969,252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2014. 5. 9. 31,950원, 2014. 6. 17. 1,240,110원, 같은 날 437,142원, 2014. 11. 11. 17,750원, 2014. 12. 10. 24,660원 합계 1,751,612원을 회수하여 위 보전비용 상환채권 원본에

총당함으로써 현재 채권보전비용 잔액금은 217,640원이다.

다. 증여계약의 체결

피고 D는 2014. 3. 7.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C, D, E, F, 주식회사 G 사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원고와 피고 H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 D, E, F, 주식회사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815,284원(= 제1약정 대위변제잔액금 108,344,011원 + 확정손해금 417원 + 대지급잔액금 217,640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243,253,216원) 및 그 중 351,597,227원(제1약정 대위변제잔액금 108,344,011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243,253,2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4. 3. 7.에는 아직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이미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주채무자인 피고 A의 대표이사피고 C가 2014. 2.경부터 대출이자,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함으로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하여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4. 6. 17.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D가 무자력이었다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H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2014. 3. 7.)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95,862,5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132,761,683원(= 원금 합계 132,350,888원 + 이자합계 410,7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를 상회하므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 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가 132,761,68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5. 7. 2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5,752,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그 피담보채무의 차액인 172,990,617원(= 305,752,300원 - 132,761,683원) 상당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의 한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와 피고 H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172,990,617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H은 원고에게 172,990,6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기, 판사 안지연, 판사 윤성진